

[붙임]

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636
----------	-----

발의일 : 2021. 12. 2.

제출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수정이유
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경기도 및 타시군과 동일하게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, 정기회의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수정주요내용

- 가. 제6조4항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.
- 나. 제10조2항을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.

수정조례안: 별 첨

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4항을

“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” 로 한다.

제10조2항을

“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” 로 한다.

